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10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배준영 · 이성권 · 정성국
이양수 · 최보윤 · 강명구
강대식 · 구자근 · 서명옥
이인선 · 최수진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나날이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대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증폭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한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10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0(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품질평가(이하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의 목적·대상·방법·항목·시기
2.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3. 선거여론조사 품질에 대한 등급부여 및 그 기준
4.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중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계획 수립 이외

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제3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위임받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계획 수립,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실시,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10(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품질평가(이하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의 목적·대상·방법·항목·시기</u> <u>2.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u> <u>3. 선거여론조사 품질에 대한 등급부여 및 그 기준</u> <u>4.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중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계획 수립 이외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제3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위임받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 기본
계획 수립, 선거여론조사품질평
가 실시,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